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출입·검사와 수거)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”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.

제28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. 10. 1. 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 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위임한다. 1. ~ 7. (생략) 8.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·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9. ~ 15. (생략) ③·④ (생략)	제13조의2(출입·검사와 수거)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”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. 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9. ~ 15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2805